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헌법 노회 수의 결과’ 공고

제110회 총회는 『헌법』 IV.정치 3건, V.권징조례 2건, 『헌법』 부록 중 권징조례 서식 1건에 대해 헌법 개정을 결의하고, 노회 수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노회 수의 결과, ‘『헌법』 IV.정치 제16장 헌법 개정 제82조 관리헌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헌법』 ‘IV.정치 제4장(목사) 제27조(목사의 휴양과 휴무) 3.’ 개정

현 행	개 정
IV.정치 제4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휴양과 휴무 1. 시무 중인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시무처를 일시 비우게 될 때에는 당회나 사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담임목사가 한 지교회에서 5년 동안 계속 시무하였을 경우 교회는 다음 해를 신학 재연수의 해로 정하고 3개월 이상 유급 휴양을 제공할 수 있다.	IV.정치 제4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휴양과 휴무 1. 시무 중인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시무처를 일시 비우게 될 때에는 당회나 사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담임목사가 한 지교회에서 5년 동안 계속 시무하였을 경우 교회는 다음 해를 신학 재연수의 해로 정하고 3개월 이상 유급 휴양을 제공할 수 있다. 3. <u>시무 중인 목사(준목, 전도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교회는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 이하의 목사(준목, 전도사) 휴직을 유급으로 제공할 수 있다.</u>

2. 『헌법』 ‘IV.정치 제10장(노회) 제54조(노회의 직무) 4.(사업)’ 개정

현 행	개 정
IV.정치 제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4. 사업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병합, 이	IV.정치 제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4. 사업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이

관, 폐지와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의 안전을 심의 결정하며 전도, 교육, 봉사, 재정 관리 등 일체를 지도하며 그러한 사업을 직영도 한다.	관, 폐지와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의 안전을 심의 결정하며 전도, 교육, 봉사, 재정 관리 등 일체를 지도하며 그러한 사업을 직영도 한다.
--	--

3. 「헌법」 ‘Ⅳ.정치 제11장(총회) 제61조(총회의 직무) 2.(의안)’ 개정

현 행	개 정
Ⅳ.정치 제11장 총회 제61조 총회의 직무 2. 의안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고 , 행정심판, 문의, 위탁 판결 등의 각 안건들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Ⅳ.정치 제11장 총회 제61조 총회의 직무 2. 의안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소 , 행정심판, 문의, 위탁 판결 등의 각 안건들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4. 「헌법」 ‘Ⅴ.권징조례 제4장(판결) 제49조(위탁 판결의 청원)’ 개정

현 행	개 정
Ⅴ.권징조례 제4장 판결 제49조 위탁 판결의 청원 치리회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판결이 어려운 사건은 그 사유를 상급 치리회에 보고하여 위탁 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Ⅴ.권징조례 제4장 판결 제49조 위탁 판결의 청원 1. 치리회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판결 어려운 그 사유를 상급 치리회에 보고하여 위탁 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2. 미조직교회는 위탁 판결을 청원해야 한다.

5. 「헌법」 ‘Ⅴ.권징조례 제10장(시벌 및 해벌) 제97조(해벌 치리회)’ 개정

현 행	개 정
Ⅴ.권징조례 제10장 시벌 및 해벌 제9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책벌 받은 사람의 관할 치리회 가 시행한다.	Ⅴ.권징조례 제10장 시벌 및 해벌 제9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시벌한 치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현 소속 치리회 가 시행한다.

6. 『헌법 부록』 ‘권징조례서식 제4호 고발장’ 개정

권징조례서식 제4호 고발장

고발장

원고(고발인) : ○○○ (생년월일 :)

소속 및 직분 : 교회 /

주소 : 전화 :

피고(피고발인) : ○○○ (생년월일 :)

소속 및 직분 : 교회 /

주소 : 전화 :

고발 사유

1. 피고발인 ○○○ 씨는 월 일(장소 :)

(권징조례 제 장 제 조 위반) → (삭제)

2. 피고발인 ○○○ 씨는 월 일(장소 :)

(권징조례 제 장 제 조 위반) → (삭제)

위와 같이 고발 사유가 확실하기에 죄증 설명서를 첨부하여 고소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고발인 ○○○ 인

아래 경유함

(※ 노회 제출 시 아래 경유)

년 월 일

○○교회 당회장 ○○○ (직인)

년 월 일

○○시찰 위원장 ○○○ (직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각급 치리회장) 귀하

(※ 당회 제출 시 경유를 생략하며, 노회 제출 시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한다.)

2026년 7월 10일

총 회 장 이 종 화
서 기 허 정 강



1. 『헌법』Ⅳ.정치 제4장(목사) 제27조(목사의 휴양과 휴무) 3.

노 회	총투표수	찬 성	반 대	무 효
서 울	55	50	5	0
서울북	93	89	3	1
서울남	78	71	6	1
서울동	72	65	7	0
경 기	68	64	4	0
경기남	78	78	0	0
인 천	41	36	5	0
경기중부	35	33	1	1
경기북	44	40	4	0
강 원	16	16	0	0
충 북	96	80	14	2
충 남	75	75	0	0
대 전	62	51	8	3
대전광역시	30	29	0	1
전 북	56	54	2	0
전북동	55	53	2	0
군 산	52	49	3	0
익 산	60	53	7	0
전 남	54	51	3	0
전남서	40	37	2	1
목 포	49	48	0	1
광 주	59	56	2	1
광주남	67	63	4	0
경 북	46	46	0	0
대 구	55	55	0	0
경 남	20	20	0	0
부 산	24	23	0	1
제 주	27	27	0	0
합 계	1,507	1,412	82	13

2. 『헌법』Ⅳ. 정치 제10장(노회) 제54조(노회의 직무) 4.(사업)

노 회	총투표수	찬 성	반 대	무 효
서 울	55	52	3	0
서울북	93	92	1	0
서울남	78	78	0	0
서울동	72	69	3	0
경 기	68	56	12	0
경기남	78	78	0	0
인 천	41	39	2	0
경기중부	35	33	1	1
경기북	44	44	0	0
강 원	16	16	0	0
충 북	96	91	4	1
충 남	75	75	0	0
대 전	61	60	1	0
대전광역시	30	27	1	2
전 북	56	56	0	0
전북동	55	53	2	0
군 산	52	50	2	0
익 산	60	58	2	0
전 남	54	53	0	1
전남서	40	39	0	1
목 포	49	43	4	2
광 주	59	57	2	0
광주남	67	67	0	0
경 북	46	45	1	0
대 구	55	55	0	0
경 남	20	19	1	0
부 산	24	24	0	0
제 주	27	27	0	0
합 계	1,506	1,456	42	8

3. 『헌법』Ⅳ.정치 제11장(총회) 제61조(총회의 직무) 2.(의안)

노 회	총투표수	찬 성	반 대	무 효
서 울	55	53	2	0
서울북	93	92	1	0
서울남	78	78	0	0
서울동	72	70	2	0
경 기	68	68	0	0
경기남	78	78	0	0
인 천	41	40	1	0
경기중부	35	34	0	1
경기북	44	44	0	0
강 원	16	16	0	0
충 북	96	95	1	0
충 남	75	75	0	0
대 전	61	59	1	1
대전광역시	30	28	0	2
전 북	56	55	1	0
전북동	55	55	0	0
군 산	52	51	0	1
익 산	60	57	3	0
전 남	54	53	1	0
전남서	40	38	1	1
목 포	49	44	3	2
광 주	59	57	2	0
광주남	67	67	0	0
경 북	46	46	0	0
대 구	55	55	0	0
경 남	20	20	0	0
부 산	24	23	0	1
제 주	27	27	0	0
합 계	1,506	1,478	19	9

4. 『헌법』 V.권징조례 제4장(판결) 제49조(위탁 판결의 청원)

노 회	총투표수	찬 성	반 대	무 효
서 울	55	51	4	0
서울북	93	92	1	0
서울남	78	76	1	1
서울동	72	72	0	0
경 기	68	62	4	2
경기남	78	78	0	0
인 천	41	36	3	2
경기중부	35	33	1	1
경기북	44	43	1	0
강 원	16	16	0	0
충 북	96	90	3	3
충 남	75	75	0	0
대 전	61	56	5	0
대전광역시	30	27	1	2
전 북	56	56	0	0
전북동	55	51	4	0
군 산	52	51	0	1
익 산	60	58	0	2
전 남	54	52	2	0
전남서	40	39	0	1
목 포	49	43	4	2
광 주	59	55	3	1
광주남	67	65	2	0
경 북	46	37	4	0
대 구	55	55	0	0
경 남	20	20	0	0
부 산	24	21	0	3
제 주	27	27	0	0
합 계	1,506	1,437	43	21

5. 『헌법』 V.권징조례 제10장(시벌 및 해벌) 제97조(해벌 처리회)

노 회	총투표수	찬 성	반 대	무 효
서 울	55	50	5	0
서울북	93	93	0	0
서울남	78	77	0	1
서울동	72	72	0	0
경 기	68	67	1	0
경기남	78	78	0	0
인 천	41	38	1	2
경기중부	35	32	2	1
경기북	44	44	0	0
강 원	16	16	0	0
충 북	96	89	3	4
충 남	75	75	0	0
대 전	61	58	2	1
대전광역시	30	27	1	2
전 북	56	54	2	0
전북동	55	55	0	0
군 산	52	51	0	1
익 산	60	56	2	2
전 남	54	52	2	0
전남서	40	38	0	1
목 포	49	44	3	2
광 주	59	56	2	1
광주남	67	65	2	0
경 북	46	39	1	0
대 구	55	55	0	0
경 남	20	20	0	0
부 산	24	21	0	3
제 주	27	27	0	0
합 계	1,506	1,449	29	21

6. 「헌법 부록」 권징조례서식 제4호 고발장

노 회	총투표수	찬 성	반 대	무 효
서 울	55	52	3	0
서울북	93	92	0	1
서울남	78	74	0	4
서울동	72	72	0	0
경 기	68	62	1	5
경기남	78	78	0	0
인 천	41	35	2	4
경기중부	35	34	0	1
경기북	44	44	0	0
강 원	16	16	0	0
충 북	96	83	1	12
충 남	38	35	1	1
대 전	58	51	5	2
대전광역시	30	28	0	2
전 북	56	56	0	0
전북동	55	55	0	0
군 산	52	49	0	3
익 산	60	54	2	4
전 남	54	54	0	0
전남서	40	37	1	1
목 포	49	44	0	5
광 주	59	55	2	2
광주남	67	63	0	4
경 북	46	37	1	0
대 구	55	55	0	0
경 남	20	20	0	0
부 산	24	21	0	3
제 주	27	27	0	0
합 계	1,466	1,383	19	54